

사업주 지원신청 방법 및 선정절차

사업개발본부 사업총괄실 F/S 지원팀





목차

- 1. 신청자격
- 2. 대상사업
- 3. 지원신청
- **4.** 사업선정



1. 신청자격



01 신청자격

- ▶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*
-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,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

02 해외건설업 신고

- ▶ 해외건설업 신고자격: 아래 1~13번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
- 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
- 2.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라 공사업(工事業)의 등록을 한 자
- 3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
- 4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
- 5.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
- 6.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
- 7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
- 8. 해외공사의 수주(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)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- 9.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
- 10. 해외공사의 개발(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)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- 11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
- 12.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
- 13.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



1. 신청자격



02 해외건설업 신고(계속)

- ▶ 해외건설업 신고서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
- ▶ 관할처리기관인 **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**에서 접수 및 처리
- 제출서류
 - 1) 해외건설업 신고서
 - 2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- 3)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관련 면허증 사본 등)
 - 4) 등록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1부
- ▶ 처리기한 :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

신고서 작 성 검 토 결 재 ^신 고 확인증



1. 신청자격



03 해외건설업 신고 면제

- ▶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,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공기업
- 한국전력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석유공사, 인천국제공항 공사, 한국공항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철도공사, 한국환경공단, 항만공사, 대한지적공사, 한국산업단지공 단, 한국가스공사, 한국광물자원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상기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
- 한전KDN, 코레일테크, 한국가스기술공사, 한국건설관리공사, 한전KPS
- 경상남도개발공사, 광주광역시철도공사, 경상북도개발공사, 광주광역시도시공사, 대구광역시도시공사, 경기도 시공사, 대구도시철도공사, 인천교통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,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
- * 단, 2019.1.1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매 3년마다 업데이트

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

⑥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**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**(이하 이 항에서 "지방공기업"이라 한다)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 건설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해외건설사업자로 본다. 〈개정 2011.8.4, 2019.4.30〉

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0조

- ①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.
-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"이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. 〈개정 2013. 3. 23., 2018. 4. 24.〉



2. 대상사업



01 대상사업

- ▶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·건설·운영관리에 참여하는 <u>인프라·도시개발사업</u>*
- 「**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**」제2조 제1호 및 제21조 제1항의 **사회기반시설 또는** 이와 연관된 사업,
- 「도시개발법」제2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개발사업,
- 기타 **에너지·건설 관련 플랜트 사업** 등 **해외**에서 수행되는 사업

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▶ <u>사회기반시설</u>이란 각종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,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(법 2조 제1호)



〈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〉



〈 신·재생에너지설비 〉



〈 철도 및 도시철도 〉



〈 가스공급시설 〉



〈 공항시설 〉



〈 공공폐수처리시설 〉



〈 전원설비 〉



〈 스마트도시기반시설 〉



2. 대상사업



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계속)

- ▶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사회기반시설의 부대사업도 단독으로 지원대상 포함
- 주택건설사업, 택지개발사업,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, 도시개발사업, 재개발사업, 산업단지개발사업, 관광지·관광단지 개발사업, 물류터미널사업, 항만운송사업, 대규모점포,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, 노외주차장 설치·운영사업, 체육시설업, 문화시설 설치·운영사업, 자연휴양림 조성사업, 게시시설의 설치·운영사업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사업, 건축물의 설치·운영사업

03 도시개발사업

► 도시개발구역에서 **주거, 상업, 산업, 유통, 정보통신, 생태, 문화, 보건 및 복지**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
04 에너지·건설 플랜트 사업

▶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또는 이와 연관된 사에 포함여부를 우선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에너지·건설 플랜트 사업 등은 건별 검토

05 지원대상 제외

▶ 자원개발



2. 대상사업



06 지원규모

► 대상사업별 지원규모는 <u>10억원 이내</u>

07 지원실적 ('20년, 총 14건)

▶ 지원국가 분포



▶ 지원공종 분포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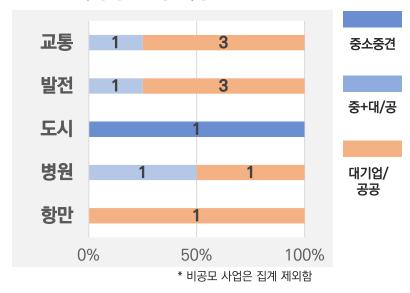
2. 대상사업 (지원실적계속)



07 지원실적(계속)

▶ 신청기업 분포

■ 대기업/공공 vs 중소,중견



· 민간기업 vs 민관합동



▶ 연간 지원규모 분포 변화





2. 대상사업 (지원실적계속)



2019년						2020년				
=	구분		국가	사업명	구분		국가		사업명	
		1	모잠비크	마푸토 1,000MW 복합화력발전	상 반 기		1	필리핀	세부 서민주택 사업	
		2	인도네시아	메단 도시교통(LRT+BRT)			2	사우디/바레인	킹하마다-코즈웨이 도로-철도 복합 PPP	
상	공모	3	베트남	하노이 농수산물 도매시장		공	3	카자흐스탄	Asfendiyarov 병원사업	
상 반 기		4	키르기스스탄	비슈케크 국립의대		공모	4	필리핀	Batangas Gas to Power 사업	
71		5	터키	이스탄불 3층 터널			5	터키	할칼리-게브제 고속철도	
	非る兄	6	미얀마	달라 신도시 개발			6	일본	Oita 바이오매스 발전사업	
		7	인도네시아	브까시 주행시험장			7	방글라데시	치타공 Bay Terminal PPP	
		8	베트남	즁깟 도시개발		非 공모	8	미얀마	양곤 남부 신도시 시범단지	
	고	9	방글라데시	다카-차토그람 도로건설	하 반 기	공모	9	인도네시아	Lore Lindu 소수력 발전사업	
	공모	10	이라크	카르발라 300MW 태양광 발전			10	미얀마	350MW 가스복합화력 발전	
하		11	조지아	츠케니스트칼리 192.5MW 수력발전			11	미국	Super Center및 Korea Medical Plaza	
반기		12	몽골	울래토르신공항경유철도			12	코스타리카	산호세 광역여객철도사업	
71	∃⊨	13	방글라데시	230kV, 400kV 송전선			13	칠레	칠로에 종단 도로 PPP	
	非る兄兄	14	방글라데시	다카-마이멘싱 도로개선		非 공모	14	파라과이	아순시온-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	
		15	코스타리카	산호세 광역철도						
	공모	16	인도네시아	반타끄방 매립지 복원						



01 신청 및 제도 절차

대상사업 공모 (약 4주) 지원신청

평가 및 선정 (약 4주) **용역 입찰** (4주~8주) **F/S 수행** (약 120~180일) 사업추진

02 단계별 역할

단계	사업주 역할	비고
지원신청	■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[서식1]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신청서 1부. [서식2] 사업제안서(예비타당성조사) 1부. [서식3] 사업제안서(본타당성조사) 1부. [서식4] 서약서 1부. [서식5] 타당성조사 정보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. [서식6] 사업 타당성조사 요청 내역서 1부.	해당 사업관련 모든 사업주 관련 서류 제 출 요망 (지원신청서, 서약서, F/S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등)
사업평가	■ 대상사업 선정위원회 중 경쟁 PT 실시	
용역입찰	■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 ■ 용역사 선정위원회 중 사업소개 PT 실시	
F/S수행	■ 타당성조사 용역 참여(직접/간접) - 착수보고회, 1차 현지조사, 중간보고회, 2차 현지조사, 최종보고회 참여	
사업추진	■ F/S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 경쟁입찰 참여 또는 對정부 협상 실시	





03 신청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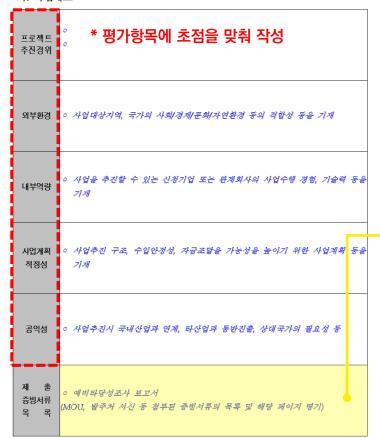
▶ [서식 1] 지원신청서

	<u>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 신청서</u>								
	(접수)	번호 :)				(접수	누일자 :)
		신청구분		예비타당성조사			본타당성조사		
	신	업 체 (대표 <i>지</i>	•			사 업 등록[
※ 서식 업데이트 예정	청 인	소 재	지	(우편번호: - 주 소:)			(Tel) (Fax)	
<u> </u>		기업규	星	□ 대기업 □ 중소	· 중견기업	매출	·액		억원
ㅇ 컨소시엄 대표사 여부	* /	니청인을		준으로 내누	역량 평	^{退予}	·처		
이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업		추진방 (BOT, BTL	4			총 사 (EP	됬미		천만 불
신고 여부	사업	사업유	형	(정부고시) (민간제안)		사업7	기간		
	개요	사업내	용						
				성 명	부 서(지위)		연락처	
		사업 담당자	정				(전화) (Fax)	(E-N	대전화) Mail)
			부				(전화) (Pax)	(E-N	대전화) Mail)
	상기]와 같이 †	해외인	민프라도시개발사업	의 타당성	조사 지원	원을 신		월 일
				_	청기업 : 표 자 :			- (서명 또	
	한-	국해외인=	드라도	- 시개발지원공사					
	천 부 서	 서약서 타당성 타당성 	1부 조사 조사	3부(전자파일 침투 정보제공 및 공개 요청내역서 1부.	동의서 1부	<u>1</u>	 	첨부서류	유의
		6. 국세 및	l 지	등본 및 사업자등록 방세 납세증명서 1 재무제표 사본 1 [‡]	부.	1부.			없 음

▶ [서식 2, 3] 사업제안서(예비/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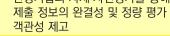
1. 지원신청 요약서

가. 사업개요



※ 서식 업데이트 예정

- ㅇ 관련 공시자료, 공식적인 증명원 등
- o 수주계약서. MOU.LOI.Letter
- ㅇ 용역 사업비 내역서 (종합, 인건비/경비/외주용역비 세부내역 - EXCEL)(필수)
- o 회사소개서(신청업체, 발주처), 프로젝트 수행 실적, 인력보유 현황 등
- ㅇ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한 자료
- o 정량평가표 (EXCEL)(필수) - 신청기업의 자체 사전평가를 통해. 제출 정보의 완결성 및 정량 평가







03 신청서류(계속)

▶ [서식 2, 3] 사업제안서(예비/본)

※ 서식 업데이트 예정(상동)

- 관련 공시자료, 공식적인 증명원 등
- ㅇ 수주계약서, MOU,LOI,Letter
- 용역 사업비 내역서 (종합, 인건비/경비/외주용역비 세부내역 - <u>EXCEL</u>)(필수)
- 회사소개서(신청업체, 발주처),프로젝트 수행 실적,인력보유 현황 등
- ㅇ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한 자료
- 정량평가표 (<u>EXCEL</u>)(<mark>필수)</mark> - 신청기업의 자체 사전평가를 통해 제출 정보의 완결성 및 정량 평가 객관성 제고

- 바, 사업의 비용 및 수입 요소의 변동성 여부
- 사업특성을 고려한 수입의 안정성.비용의 추정 등이 사업계획과 적정한지 여부를 쫑함적으로 고려하고 수입요서와 비용요소의 민감도 설명
- 6. 공익성 관련 사항
- 가, 수출파급효과
-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국내 기자재/인력 활용 계획 또는 국내 타 산업기업과 동반 진출 가능성 및 영향도
- 나, 주재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
- 현지국의 경제부흥에 미치는 영향 또는 관련 정도

7. 관련 증빙자료

- 프로젝트 실체 및 수주활동 사실(계획)을 입중하는 서류 동
- 1. 관련 공시자료, 공식적인 증명원 등
- 2 수주계약서 MOU LOI Lette
- 3. 사업비 내역서(종합, 인건비/경비/외주용역비 세부내역 EXCEL 자료) (필수사항)
- 4. 회사소개서(신청업체, 발주처), 프로젝트 수행 실적, 인력보유 현황 등
- 5.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한 자회
- * 기타 가점 관련서류도 제출필요

▶ [서식 4] 서약서

서 약 사

본인은 금번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대상사업 모집에 지원함에 있어서, 다음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은 신청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성실히 용역기관 에 제공 하겠습니다.
- 2. 본인은 지원받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건설특화편드의 투자 가 결정된 경우, 동 펀드의 지분 및 대출참여를 허용하겠습니다.
- 3. 본인은 지원받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 원공사에서 투자의향을 밝히는 경우, 타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는 동 공사의 참여에 우선권을 허용하겠습니다.
- * 해외건설특화펀드 대출참여 및 로부터 3개월마다 한국해외인 KIND 지분참여 허용조건

년 월 약

신청기업명 :

서약인: (인 또는 서명)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





03 신청서류(계속)

▶ [서식 5] 정보제공 및 공개 동의서

타당성조사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

본인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모집에 지원함에 있어, 신청 사업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이용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. 또한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이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이후 1년 이내에 후속적인 사업추진이 없거나 더이상 사업추진이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* 1년 이내 사업추진이 없을 경우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가능

년 월 일

신청기업병 :

서약인: (인 또는 서명)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

► [서식 6] 사업타당성조사 요청 내역서 OOO 사업 타당성조사 요청 내역서

□ 총 타당성조사비용 : 원(부가세 포함)

	부담비용 :원]업 부담비용 :	원	
타당성조	사 업무 분장 및 비용분담		
			(단위 : 원)
구 분	KIND	OOO기업	
재 무			
법 률			
기 술			
시 장			
합 계			
 * 보기세 :	ਜ਼ਿਲ੍ਹੀ		

- □ 타당성조사 주요내용
 - ㅇ 기술
 - ㅇ 법률
 - ㅇ 재무
 - o
 - ☞ 항목별 타당성조사 주요 항목/내용 기재

* 업무범위 구분하여 전액/일부 지원 요청

☞ 재무, 법률, 항공수요, 기술 등 필요항목을 구분 기재



4. 사업선정



01 대상사업 평가 및 선정

- ▶ 대상사업 선정위원회
- 위원장: KIND 사업개발본부장
- 위 원: 내부위원+외부위원*(외부위원 과반)으로 구성
- *외부위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Pool을 활용하여 무작위 선출하여 공정성 확보
- ▶ 평가방법: 신청기업의 PT 발표(발표 20분, 질의응답 20분) 후 평가기준에 따른 위원 평가
- ▶ 평가기준 : 예비타당성조사·본타당성조사
- ▶ 종합평점(총점 200점, 가점 20점 별도)
- 예 타:계량평가(75점) + 정성평가(125점) + 가점(20점)
- 본 타:계량평가(40점) + 정성평가(160점) + 가점(20점)
- ▶ 선정방법 : 최소 점수(150점) 이상을 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


4. 사업선정



02 평가항목(예비타당성조사)

▶ 본타당성조사 대비 **내부환경**에 높은 배점. **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경험** 및 **대상지역 사업경험**이 있을 경우 유리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(200점)
1. 외부환경 (15점)	사업대상 지역의 정치·사회적 안정성 사업대상 지역의 경제·환경 사업대상 지역의 자연환경	5 5 5
2. 내부환경 (75점)	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수행 경험 대상지역 사업경험 기업신용등급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	20 25 15 15
3. 사업계획 적정성 (95점)	사업추진단계 수입 안정성 사업추진구조(출자자 구성)	30 40 25
4. 공익성 (15점)	수출파급효과(국내 기자재/인력 활용여부, 국내기업과 동반진출 등) 주재국 정책 및 사업적합성	10 5
5. 기타 가점	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 사업 (7점) 중소·중견기업 진출사업 (8점) 정부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수주 경험 가점 (5점)	



4. 사업선정



02 평가항목(본 타당성조사)

▶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**사업계획 적정성** 높은 배점. **사업성에 대한 기본자료 필요**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(200점)
1. 외부환경 (15점)	사업대상 지역의 정치·사회적 안정성 사업대상 지역의 경제·환경 사업대상 지역의 자연환경	5 5 5
2. 내부환경 (35점)	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수행 경험 기업신용등급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	15 10 10
3. 사업계획 적정성 (135점)	사업추진단계 비용의 적정성 사업추진구조(출자자 구성) 수입 안정성 투자회수 방법 및 기간 수입과 비용의 민감도 검토	45 20 10 45 10 5
4. 공익성 (15점)	수출파급효과(국내 기자재/인력 활용여부, 국내기업과 동반진출 등) 주재국 정책 및 사업적합성	10 5
5. 기타 가점	은행의 대출의향서(LOI) 또는 추천서 제출시 가점 (5점)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 사업 (5점) 중소·중견기업 진출사업 (5점) 정부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수주 경험 가점 (5점)	



감사합니다

KIND 사업개발본부 사업총괄실 F/S 지원팀 fs@kindkorea.or.kr

